청문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

정치경제위원회

인사청문회 법 개정안

부서 정치경제위원회

작성년월일 2013.2.14

발표자 이환인

PPT 최경호

발의자윤병석

공동 청원인

전재운 전장환 안성준 최경호 강준구 이루다 박세민 김민정 이원빈 우재연 김형원 박진아 문지혜

목차

기정안 1. 2. 인사청문회란 현 청문회의 3-1.제 3조 무엇인가 문제점 3-2.제 6조 3-3.제 9조 3-4.제 10조

Chapter 1

인사청문회란 무엇인가

인사청문회란 무엇인가

역되산학왕목章 취용할 해 택회작업왕절화를 거뒀게함 역보자 대통장을 연외하관 왕 는지를 검증하다.

Chapter 2

현 청문회의 문제점

<표4>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뤄진 주요쟁점 100개 현 청문회의 구분 빈도 문제점 고위공직자 가족 관련 단위:% 부동산 관련 뇌물 수수 · 특혜 등 •••• (4) 주식 관련 도덕성 • • • (3) 병역 **) (**5) (49)법규 위반 전채의 60% **••••** (4) 탈세 대출 (2) 검증을 논문표절 (1) 발언 관련 강화하 자질 및 행적 품행 관련 53.4 (11)철화 **(2)** 정책 대응 (2) 불과 정책 일관성 • • • (3) 전문성 정책실패 **DO** (4) (23)20% 업무처리 미흡 업무경험 정치적 이유 이념 · 정치색 내강 기구 유디 코드인사 • 돌려막기인사 자료출처 95% 신뢰수준이 ※ 전체 인사청문회 54회 중 다뤄진 주요 쟁점 100건 복수 수집 경향신문

Chapter 3

개정안

제 3조

전 제3조(인사청문특별위원회) ① 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(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)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. 〈개정 2003.2.4〉

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한다. 〈개정 2003.2.4〉

조항 개정

③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(이하 '의장"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9인으로 하며 가장된 발부터 2일 제 3조 7항에 제시되어있는 국가기관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에 포함한다.

조항 신설 ^{수 있다. 〈개정 2003.2.4〉}

등하고 교립문제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.

⑦국가기관은 기관 당 3인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역할을 수행한다. 다음과 같다. 1.국가정보원, 국가인권위원회, 국민과학기술위원회, 국민권익위원회, 금융위원회, 방송통신위원회

<u>⑥이사천무특별위워하는 인명동이아들이 보하이에서 이경된 때 또는 이사천무경과가 보하이에</u> 보고 될 때까지

- ⑧자문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전문성평가기준안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1.자문단의 인선은 입법부가 선출하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2.자문단은 다음과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.
- 가. 국방자문위원단에는 군사전문가, 외교전문가, 남북통일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.
- 나. 경제자문위원단에는 금융전문가, 세법전문가, 행정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.
- 다. 복지자문위원단에는 인권전문가, 국민권익전문단, 양성평등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.
- 라. 환경자문위원단에는 환경오염전문가, 생화학전문가, 생태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.

제 6조

<u>■ ■ 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</u> ① 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

부하며, 그 심사 또는 이사청문특별위원회의 공직자자질평가기준안 완료표결이 가결된 시점에 다만, 폐회 또는 휴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공직자자질평가기준안 완료표결이 가결된 시점에 인상 가장 기존한 기존 인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. 〈개정 2003.2.4〉 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. 〈선 조항 삭제 2003.2.4, 2005.7.29, 2007.12.14〉

제 9조

- 🤨 🔳 **제9조(위원회의 활동기간등)** 🛈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, 인
 - 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 조항 개정
 - 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 제6 회부된 날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공직자자질평가기준안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. 〈개정 20 완료표결이 가결된 시점까지를 인사청문 활동기간으로 지정한다.
 - ②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 〈개정 2002.3.7, 2003.2.4〉
 - ③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(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작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)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 〈개정 2003.2.4〉 조항 작기

제 10조

- 제10조(경과보고서)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심사경과 또는 인사 사정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3.2.4〉
 - ②의장은 보고서가 경과보고서는 자문단의 전문성평가기준안 및 공직자자질평가기준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 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중 <u>국회법 제46조의3제1항</u>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심사 경과보고서로 본다. 〈신설 2003.2.4〉

[제목개정 2003.2.4]

